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네트워크 포럼

제주 마을제의 특성과 제주형 자치문화의 지속가능성

| 일시 | 2025. 7. 4. (금) 14:0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Tel. 064)726-5623 Fax. 064)900-1840
www.jst.re.kr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네트워크 포럼

제주 마을제의 특성과 제주형 자치문화의 지속가능성

| 일시 | 2025. 7. 4. (금) 14:0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개회식		사회: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4:00~14:20	개회사 김완병(제주학연구센터장)	
	격려사 유영봉(제주연구원장)	
[1부] 제주 마을제의 전승현황과 자치문화적 특성		좌장: 현승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14:20~14:45	[발표1] 마을제 관련 갈등양상 진단 및 대안 모색	이현정(한국교통대 연구교수)
14:45~15:10	[발표2] 제주 마을제의 전승 주체와 지속가능한 제주형 자치문화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5:10~15:35	[발표3] 마을제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과 축제로의 전환 가능성	허남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15:35~15:50	휴식	
[2부] 종합 토론 - 제주 마을제의 지속가능한 전승 방안		좌장: 김현선(경기대학교 교수)
15:50~17:50	한진오(작가, 제주대학교 박사)	
	문봉순(제주큰굿보존회 사무국장)	
	임승범(국가유산청 조사연구기록과장)	
	윤원수(제주연구원 자치문화연구부장)	
	문창선(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변지철(연합뉴스 기자)	
	오용부(제주큰굿보존회 부회장)	
	고성봉(한남리 전 이장)	
	김명숙(가시리 상단골 중부)	
	강경찬(송당초등학교 교무부장)	
17:50~18:00	폐회	
18:00~	만찬(오라성)	

차례

[개회사]

마을제 관련 주체들이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제주 마을공동체의 미래 ————— 6

김완병(제주학연구센터장)

[격려사]

도민 삶의 공동체성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주 마을제 조사 연구 ————— 8

유영봉((제주연구원장)

[발표1]

마을제 관련 갈등양상 진단 및 대안 모색 ————— 13

이현정(한국교통대 연구교수)

[발표2]

제주 마을제의 전승 주체와 지속가능한 제주형 자치문화 ————— 41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발표3]

마을제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과 축제로의 전환 가능성 ————— 67

허남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마을제 관련 주체들이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제주 마을공동체의 미래

제주의 마을제는 한반도의 육지부와 사뭇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칠머리영등굿’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제주큰굿’이 국가중요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송당본향당굿과 납읍리 마을제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5개 유형유산과 2개 무형유산, 그리고 한남리 본향당 등 8개의 마을제 관련 향토유산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에서 당굿이나 포제, 이사제, 영등굿, 풍어제 등을 전승하고 있어 그 고유성과 독창성, 현재적 전승력과 지속가능성이 널리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마을공동체 제의 전통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마을공동체 제의 전수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당굿, 포제, 이사제 등을 전수조사하여 집대성하는 방대한 과제입니다. 이번 네트워크 포럼은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집대성하면서 제주 마을제의 특성 살펴보고, 제주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마을공동체 자치문화와 마을제의 상관 관계 등을 규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사업과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사연구진으로 허남춘 제주대 명예교수님과 한국교통대 이현정 연구교수님이 심층조사와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 마을제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 멀리 서울에서 김현선 경기대 교수님이 발걸음을 해주셨고, 대전 국가유산청에서 임승범 조사연구기록과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위해 제주큰굿보존회에서 오용부 심방님

과 문봉순 선생님이 참여해주셨고, 남원읍 한남리에서 고성봉 전 이장님, 표선면 가시리에
서 김명숙 상단골 종부님이 오셨습니다. 제주대에서 현승환 교수님과 한진오 박사님, 마을
문서 전문가인 문창선 선생님과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제와 관련한 어린이용 교재를 개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좌읍 송당초등학교 강경찬
교무부장님, 본원에 계시는 윤원수 자치문화연구부장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주 마을제 네트워크 포럼이 제주학연구센터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제주 마을
공동체의 제의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 정체성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와 토론의 장을 통해 ‘제주다움’으로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연
구 및 진흥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4일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도민 삶의 공동체성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주 마을제 조사 연구

1만 8천 신(神)들이 좌정하고 있고 ‘절 오백, 당 오백’이라 일컬어지는 제주에는 각양각색의 공동체 제의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마을제는 마을공동체의 다종다양한 구성원들이 결속하여 봉행하는 전통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화합을 상징하는 마을제 역시 마을 주체 세력들의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헤게모니를 선점하고자 각축을 벌이는 살아 생동하는 유기체적 마을문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제를 통해 제주형 자치문화의 여러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사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는 입도조 관련 기록과 유적, 호적중초, 각종 마을문서, 마을제, 세시풍속, 생활사, 지명유래, 해녀문화, 화전문화 등 실로 방대한 주제적 접근을 통해 제주의 마을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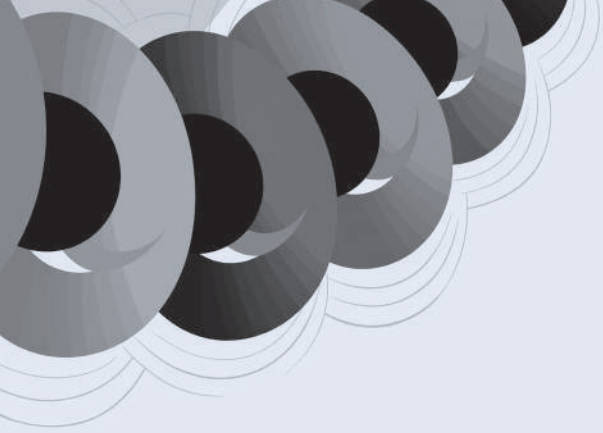
이번 제주 마을제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지혜와 노력을 모아 주셨습니다. 멀리 육지에서 경기대 김현선 교수님과 국가유산청 임승범 과장님께서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 물을 건너오셨고, 제주대에서 현승환 교수님, 한진오 박사님, 그리고 제주큰굿보존회에서 오용부 심방님과 문봉순 선생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남원읍 한남리에서 고성봉 전 이장님, 표선면 가시리에서 김명숙 상단골 종부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마을문서 전문가인 문창선 선생님과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님께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좌읍

송당리에서 초등학생에게 마을제와 제주신화를 가르치고 계신 강경찬 교무부장님, 본원에 근무하는 윤원수 자치문화연구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완병 센터장님을 필두로 조사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대 허남춘 명예교수님과 이현정 연구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네트워크 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적 조사 연구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마을제 조사 연구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며 ‘제주다움’으로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4일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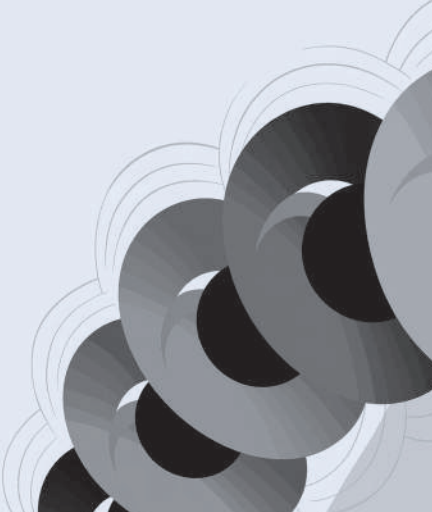


[발표1]

마을제 관련 갈등양상 진단 및 대안 모색

이현정

한국교통대 연구교수



마을제 관련 갈등 양상 진단 및 대안 모색¹⁾

해마다 제주도에서는 약 250여 개의 마을(신앙)공동체가 전통을 좇아 다양한 모습의 마을제 - 유교식(포제) 마을제, 무속식 마을제(당굿·영등굿)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제의(해녀굿·돛제) - 가 벌어진다.²⁾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제도적 차원에서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해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마을제와 해녀굿 등을 치르는 일부 비용과 마을제

-
- 1) 이 글은 장기 연구의 기초 작업이자 입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제의 특수성과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의 외부 활용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 이는 2007년 당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450여 개에 이르는 제주도 마을신앙의 지속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2023년에 전수 재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유형동·류진옥·이현정 조사, 국립민속박물관, <부록: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신앙 전승현황표>, 『한국의 마을신앙: 제주특별자치도』, 2023, 444-477 참고). 집계 결과 제주도에서 2023년 기준, 468개 중 마을제를 지속 전승하는 마을은 246개, 단절·중단한 마을은 189개, 복원 예정인 마을은 5개, 확인 불가인 마을은 28개에 달한다.

제단의 복원·정비 비용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³⁾ 조례 제정 이후, 여러 마을에서 단절되었던 전통 마을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실제로 포제의 경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복원·전승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 행정 차원의 지원에도 마을제가 전승되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미 생활 양식의 변화, 인구 변동 등으로 자생적인 신앙 기반이 약화·와해되어 가는 현실도 있거니와, 지정 유산 제도의 도입과 시행 등이 오히려 ‘마을제’의 준비 과정, 진행 방식, 전승 환경 등에 많은 변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특히 근현대에 마련된 법적·윤리적 규범이 마을제의 전통적인 연행 방식과 충돌하며 발생한 사회 갈등, 국가유산 지정 이후 또는 비지정 유산이기에 빚어지는 전승 체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 등은 단순히 제도·행정상의 보완·정비의 문제를 넘어서, 전통문화유산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전통과 현대의 조율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전통문화유산의 유지와 관리’라는 협소한 범주로 한정하기 어렵다. ‘보전’과 ‘실천’을 지향하는 전승공동체의 내적 요구와 이를 둘러싼 제도적 틀, 그리고 연관된 사회적 견해들이 맞물리는 국면에서 따져보아야 할 거리들이 많다.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세밀하게 짚어내고 충돌하는 가치와 요구들 사이에 균형점을 설정하는 일, 전통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특히 이러한 모색은 특정 집단이나 기관의 과업으로 국한될 수 없다. 지자체, 행정 주체,

-
- 3) 제주도의 마을제는 포제 또는 리사제 등으로 불리는 유교식 제의(이장 및 마을주민(자치회 등) 주관), 마을 내에서 생업공동체(잠수회,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벌이는 마을굿의 성격을 띤 무속 제의, 당굿이지만 마을 전체 혹은 자치회가 주관이 되지 않고 단골판(일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벌이는 무속 제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포제·당굿),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영등굿·잠수굿·풍어제 등)에 근거하여, 제의 비용 일부에 따른 지원금이 조달되는 형편이다. 2022년 기준 조례 지원 대상 마을 수는 제주시 112건, 서귀포시 33건, 해녀굿 33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의거한 신청과 지원은 대부분 포제(리사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승공동체, 지역학 연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그를 넘어서는 사회공동체 전체가 함께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 하겠다.

사안이 엄중하지만, 지금처럼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다소 불편한 주제일 수 있으나, 이 발표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희생 제의와 동물권 논쟁, 일부 지정/비지정 유산 간의 간극과 명암 등 시의성이 드러나는 갈등과 문제 양상들을 짚으려 한다.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마을제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한 공존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모색하는 가운데,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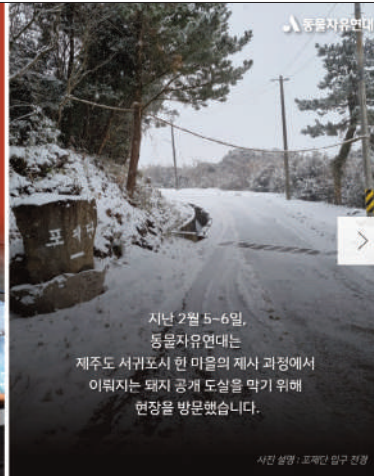
첫째, ‘동물 희생’ 전통과 근현대 제도(법령)·윤리 규범 간의 충돌

포제에서 행하는 ‘희생’ 전통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 들어(2025년) 급격히 표면화되었다. 포제의 ‘희생’전통은 제의 봉행 전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의식이다. 보통 입제일(入祭日)에 제관이 직접 살아 있는 돼지를 처리하여 희생을 마련하는데, 그러한 행위와 과정이 지역신문을 통하여 대중에게 알려진 뒤 동물권보호단체에 제보되면서 거센 규탄을 받게 된 것이다.⁴⁾

동물권보호단체는 포제 봉행을 위한 희생 제의가 ‘공개 도살’을 자행하는 ‘동물 학대’라고 지적하고, 포제의 ‘희생’ 전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사회적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온라인 신문 등의 언론매체와 블로그 따위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 사실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대중들의 비판적 반응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동물권보호단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공식 민원

4) 동물자유연대(KAWA), <동물의 희생을 대가로 평안을 바라는 풍습은 그만 되어 합시다!>,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글(<https://blog.naver.com/animalkawa/223768182959>); 고은경 기자, <흑돼지를 현장서 죽여 제물로... 동물학대 논란 제주 의례 ‘포제’ 바뀌나>,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2025.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0614300000738?did=NA>(검색일 2025.2.15.).

을 제기하여 제도적 개입과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 ○○면의 10여 개 마을(신앙)공동체와 동물권보호단체 간, 동물권보호단체와 행정 기관, 마을공동체와 행정 기관 간에도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 또한 각 마을공동체 내에서도 포제 향회를 거쳐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합·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었다.



[사진1] 동물자유연대(KAWA) 블로그 글에 삽입된 포스터 일부

[사진2] 한국일보 기사 일부

결국 이 갈등은 서귀포시 ○○면 ○○1리를 포함한 10여 개의 마을공동체에서 올해 포제에 도축된 지육(枝肉)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일단락되었다.⁵⁾ 하지만 동물권보호단체는 올해를 기점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마을제와 공동체 제의를 중심으로 동물권 침해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현장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유산의 계

- 5) 다음은 인터넷 기사로 보도된 내용 중 일부를 직접 발췌한 것이다. “포제 진행 시 전통적으로는 제의를 시작하는 날 오후에 양돈장에서 희생으로 쓸 검은 수돼지를 데려와 포제단 어귀의 길목에 매어 놓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도축해왔다. 성읍1리가 올해 포제에서도 돼지를 현장에서 도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선면에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전달했다. 이에 표선면은 10개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도살 대신 지육을 사용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성읍1리의 경우 올해도 전통 도살 방식을 고수하려다 한국일보 취재가 시작되고, 단체가 현장에 참석하면서 도살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은경 기자, 위의 기사.)

승을 표방하는 제의적·전통적 규율이 동물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지속하여 추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출처 : 제주자연대

❖ 돼지 공개 도살하겠다는 마을

돼지를 공개 도살한다는 제보가 접수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마을이었는데요, 이른바 포제(醢祭)라 부르는 마을제를 위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돼지를 도살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이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지난 12월 제보를 받고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달 결국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부인이 제사 장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도살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완고했습니다. 그게 전통이라는 이유여서였고, 설득 끝에 일단 이번 제사의 공개 도살은 가파스로 막아줍니다.



출처 : 태안군

● 공개 도살 관습을 폐기하라!

공개 도살을 폐지한 지역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향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이 되면 어민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가 열립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향도 풍어제'에서는 과거 제사 과정에서 소를 공개적으로 도살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 2월 동물자유연대는 태안군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공개 도살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태안 사례는 공개 도살이 반드시 전통의 필수 요소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희생시키는 관행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으며, 제의에서 반드시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할 때입니다.

제주의 변화 여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주세요

[사진3-4] 동물자유연대(KAWA)의 전체 회원 메일링 내용(2025.3.5.)

※부분 음영은 별도로 글쓰기가 덧입힘

사실상 포제를 포함하여 제주도의 마을제와 공동체 제의에서 치러지는 희생 제의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 체계 하에서는 여러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우선 희생 제의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으며,⁶⁾ 제13조에는 “동물을 도살할 때 불필요

6) <동물보호법>[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그런데 실제 마을제를 포함한 공동체 제의의 희생 절차는 ‘제장을 중심으로 한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해당 부분이 ‘도살 행위의 공개 실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도살을 수행하는 주체의 ‘비전문성’, ‘합법성’이나 도살 과정을 문제 삼는다면, “도살되는 동물이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겪는다”라는 주장도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 역시 법률상 ‘동물 학대’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희생 제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법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서는 “모든 도축 행위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⁸⁾ 따라서 마을제(또는 공동체 제의)와 관련한 특정 장소에서 도축을 행하는 일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동물보호법>[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8)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2., 2016. 2. 3.> 1. 학술연구용

은—설령 그것이 제의 집전과 전승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다. 의례 규범상 특정 형태의 희생을 공수하는 방식, 희생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 제의 이후 희생을 분육(分肉)하는 행위 등도 사실상 ‘식용 축산물의 유통 및 위생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법에서는 축산물의 보관 온도, 가공 시설의 위생 조건, 유통 경로를 철저히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제를 비롯한 공동체 제의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희생 제의의 집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희생을 공동체가 나누고 소용하는 전통 일체 역시 ‘비공식 축산물 유통 행위’, ‘공중위생’과 관련한 문제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제의의 전통성과 신성성을 유지하려는 신앙공동체의 의도와 달리, 희생 제의 자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여러 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희생 제의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제주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내·외의 여러 지역과 다양한 문화권에서 거듭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⁹⁾ 국내만 하더라도 이미 충청남도 태안군 황도(黃島)의 봉기퐁어제(도 지정 국가유산)에서 희생(소)를 마련하는 제의 절차를 두고 동물권보호협회와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논란이 격화되면서 희생 제의는 신성한 제의로서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일종의 공개 도살로 간주되어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는 해석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 9) 희생 제의와 동물권 논쟁의 국외 사례를 다룬 논의로는 박정석의 논문이 있다(박정석, 「네팔의 사회정치적 변혁과 동물 희생제: 테라이 지역 가디마이(Gadhimai) 사원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74, 비교민속학회, 2021, 9-32쪽. 아쉽게도 국내 사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하였다. 관련하여 한국민속학회에서 2024년 하계학술대회 대주제를 ‘민속학의 사회적 쓸모: 시대가 묻고 민속학이 답하다’로 내건 뒤, ‘동물권’을 포함한 여러 소주제에 대한 발표자를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동물권’ 이슈는 해당 학술대회에서 관련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 우세해졌고, 결국 지자체와 전승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폐지되었다.¹⁰⁾ 황도 봉기퐁어제의 이러한 변화상은 전통 제의의 전승 방식이 현행법 제도와 현대적 윤리(가치) 규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이자, 신앙공동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법과 제도 그리고 여론의 제약을 받게 된 현실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원을 넘어 신앙공동체의 자율성과 권리, 전통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신앙공동체의 입장에서 희생 제의는 단순한 제물의 봉헌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를 도모하는 신성한 질서, 그러한 신앙 윤리의 실천이다. 특히 제주도 마을제와 공동체 제의의 전통에서 희생 제의는 신에 대한 정성과 헌신이 집약된 제차(祭次)이자, 공동체의 무사 안녕과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핵심 제차이기도 하다.

-
- 10) 다음은 태안군 황도봉기퐁어제의 희생 제의를 둘러싼 갈등 과정과 동물권보호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블로그 글의 일부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태안군에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 공개 도살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안군도 법 검토 후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태안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태안군이 제사를 관장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을 설득했고, 이장님도 마을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소 공개 도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으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소를 공개적으로 도살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도축장에서 도살한 소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는 가축으로서 합법적 도축이 가능한 동물이기에 도축된 소를 제사에 이용하는 것까지 제재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농장동물 복지 운동은 육식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며,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소를 공개적으로 도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낸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습에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시민 의식이 성장한 만큼 과거부터 이어져온 행사 역시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해묵은 관습을 벗어던지고 동물의 생명 또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KAWA), 〈마을 제사를 위한 ‘소 공개 도살’을 막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글(2024.2.5.) <https://blog.naver.com/animalkawa/223344923460>(검색일 2025.5.23.)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의례의 상징성과 그 맥락을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에게 바치는 정성과 헌신의 상징인 ‘희생’은 오늘날의 법의 기준 아래 ‘동물 학대’라는 프레임에 갇혀,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되며 비판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신앙공동체가 의례적 율법으로서 견고하게 지켜온 전통과 전승, 그 실천을 위한 연대와 참여,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는 신성한 행위들이 ‘허가 없는 도축 행위’, ‘무허가 유통’, ‘비위생적 식품 처리 행위’라는 유례없는 비판을 받으며, 법 제도의 틀에 갇힌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여 있다. 신앙공동체의 연대와 헌신으로 지속되어온 공동체 제의의 전통이 ‘사라져야 할 구습’이나 ‘위법한 관행’으로 치부되어, 사회의 비판과 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올히는 그 ○○○○에서 와가지고 말이야. 그 돼지를 못 잡게 허는 거야. 그런 것도 옛 풍습이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도에서 시정해줘야겠더라고. 그건 마을제 허는데 그것까지 위생 관념을 허고 뭐 도살이라고 이렇게 헤 가지고 와서, 그 그사람들이 지켜 사가지고 못 허게 허는 거는 건 정말도 안되겠더라고. 이제꺼지 아무일 엇이 지내왔는데, 지금에 와서 좋아 가는 세상에 그런 걸 못 허게 만든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식으로 치를 때는, 여기는 돼지를 제관이 합격을 해야 올리는 건데. 그거를 못 허게 하는 거는. 마을제를 못 하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금년부떠는 단속허레 왔더라고. 동물보호차원에서. 저디 가서 잡아다가 하라는 데, 제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이러는 거면, 그것 7뜨면은 못 허게 해도 되는데, 거제에 올리는 거는.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라. 이제까지 헤 온 역사가 일제 시대에도 계속, 우리 부락이 이거 600년 된 부락인디, 600년 동안 헤 온 걸. 걸 못 허게 한다면은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혈 건 허고 못 혈건 못 허게 해야지.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걱정이고. 딴 데서 잡아와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건 현장에서 잡아야 이렇게 헤 가지고 깨끗하게 정성을 올리는 건데. 우리 부락뿐이 아닐 겁니다. 딴 디도 그 분들이 가가지고 말이며 그런 단속을 허니까. 우리 마을에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엇어났는디, 그 이번 금년부떠는 단속허레 왔더라고. 게난 그것이 뭇니까, 그것이 부정이나 딴 데 가면 어디 무슨 장이라도 나곡 뿔허민 부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에. 딴 것도, 나쁜 것도 보이고 이러니까 조용헌 디서 것도 잡아가지고

신께 올리는 거지. 그런 걸 못 하게 하니깐 상당히 안되는 것 같애. 이걸 부락에 정성이영 성의 아니파? 그런 거 외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¹¹⁾

제주도의 마을제 전승 현장에서는 동물권보호단체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신앙공동체는 상당한 반감을 표명하는 상태이다. 한 마을 원로의 발언에서 ‘○○○○’라고 지칭된 주체는 공공 행정 기관이 아니다. 동물권보호단체 또는 관련 NGO로 추정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로가 이들을 ‘공식적인 제도권’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과 현대의 윤리·가치 규범의 잣대를 들이치는 외부 단체의 현장 개입이, 한편으로는 전승공동체에게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존속을 위협하는 압력 또는 권력처럼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신앙공동체가 느끼는 압박은 법 조항이나 현실적 규제뿐만이 아니라, 희생 제의를 둘러싼 사회 갈등의 조정 구조 자체가 부재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관련 부서와 행정 기관 등은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였고, 갈등의 중재에서도 한걸음 물러서 있는 상태이다. 신앙공동체는 사회로부터 일방적인 지탄과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정작 제도적·행정적으로는 보호받지는 못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급변하는 사회 인식과 윤리 담론 속에서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를 비롯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갈등 양상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희생 제의를 둘러싼 동물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신앙공동체와 일부 동물권보호단체 간의 거센 입장 충돌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중심되어 온 기존 접근을 넘어 ‘조정’과 ‘책임’의 역할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을제를 비롯한 공동체 제의 전승의 실질적인 주체는 행정 기관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비롯한 신앙공동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상 제의의 동물 희생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여러 전승공동체는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왔다 - 물론 이 같

11) 서귀포시 ○○면 ○○1리 마을 원로(강○○, 1942년생)의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2025.05.27. 이현정·조정현 면담조사).

은 자구책을 갖추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 예를 들어 제청에서 희생을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축된 상태의 제물을 사용하는 형태로 제의 양상이 이미 변화한 사례, 온마리의 돼지를 바치던 방식을 분육(지육)을 사용으로 대체한 사례, 희생 제의를 생략하고 이를 대체하거나 갈음하는 제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일방적인 규제나 권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공동체 내부의 논의와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공동체의 자생력과 자정력을 전제로 한 ‘내부 조정권’이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희생 제의가 단순히 위법한 ‘도살 행위’로 판단·평가돼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축적된 신앙공동체의 연대와 전승의지가 함의된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존재 자체 또는 그 맥락과 상징성을 존중하는 시선도 요구된다. 특히 마을제를 포함한 공동체 제의는 시대 변화와 신앙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구성되어 온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라는 점에서, 조정과 전환의 여지를 품은 전통으로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자문기구를 활용하는 한편, 갈등 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예: 갈등 조정 플랫폼)를 새롭게 구성하여 갈등 상황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승공동체의 자생력·자정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갈등 조정 플랫폼은 제의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에 별도의 조정 단계를 마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법망이나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전락하거나, 전승공동체를 배제한 급진적인 요구 또는 일방적인 종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더 적극적인 행정·제도의 개입이 요구될 경우, 특례 조항 신설도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률적 예외 조항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고 실현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갈등 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제를 포함한 공동체 제의, 곧 전통문화유산이 오늘날 사회의 요청과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형식을 함께 다듬어 가는 실천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 ‘희생 제의’와 같은 전통이 단순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앙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관련 기관은 갈등 중재와 해결책의 지원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정립될 때, 비로소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마을제(공동체 제의) 전승의 현재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정/비지정 유산의 간극과 명암

제주도 마을제의 연행은 전통적인 공동체 신앙 체계의 제도화된 규범이자 그 실현態(實現態)이다. 무속 신앙 체계는 신당(神堂), 본풀이를 포함한 곳(의례), 심방과 단골판(전승 주체), 관련 물질·정신 문화 등의 복합체이다. 유교식 신앙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마을제 전승과 관련한 유산들을 유형과 무형이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거나 환치하는 일은 옳지 않다. 다만 제도가 그러하므로 관련 유산 중에서도 역사적·학술적·민속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는 사례 몇몇이 시·도 지정 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제도·행정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신당을 유형유산(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신당이 제의를 포함한 신앙 기반을 유지해 온 구심점이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어 그 형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신당은 유형유산의 범주에서 지정 여부가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무형의 요소 - 제의 전승의 지속과 특별함 - 역시 지정의 명분과 당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시대 변화나 특정 요인으로 인하여, 일부 지정 유산에서는 제의 전승이 단절 직전의 위기에 처하거나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기에 이른 상황이다. 더불어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엄격히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는 신당의 외형을 보존하는 데 치중하게 되면서, 본질적인 유산 가치 - 전승공동체의 생명력과 지속성 - 는 희미해지고 점차 형체만 남은 유산으로 보호·관리되는 아이러니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표1] 마을제 관련 시/도 지정 국가유산 목록

무형유산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면적(m ²)	지정일
5	송당리마을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사무소		1986.04.10
6	납읍리마을제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사무소		〃
민속문화유산(기념물)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면적	지정일
9	제주도신당			2005.04.13.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면적	지정일
-1	송당본향당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99-1번지	264	"
-2	새미하로산당	제주시 회천동 1058번지	228	"
-3	와흘본향당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74-1번지	13	"
-4	수산본향당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1번지	81	"
-5	월평다라룻당	제주시 월평동 1137번지	99	"

민속문화유산(향토유형유산)

관리번호	명칭	지정대상	지정범위	소재지	소유자	지정일
향토유형유산 제9호	회천동 석상	석상 5기	석상 5기	제주시 회천동 2390-3	회천동 마을회	'13.12.27
향토유형유산 제13호	강정 본향당	신당 1식	330㎡	서귀포시 강정동 4276번지	김○순	'13.12.27
향토유형유산 제14호	서귀 본향당	신당 1식	486㎡	서귀포시 서귀동 535번지	서귀포시장	'13.12.27
향토유형유산 제15호	예래 본향당	신당 1식	1,484㎡	서귀포시 하예동 117번지	나○구	'13.12.27
향토유형유산 제22호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신당1식	799㎡ (돈짓당 164㎡, 보호범위 635㎡)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1-2번지 지선 공유수면	종달리, 종달어촌계	'18.4.25
향토유형유산 제30호	한남리 본향당	신당 1식	630㎡ (팽나무 2그루, 제단 3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092번지	(관리자) 한남리 마을회	'20.5.26.
향토유형유산 제37호	김녕리 서문하르방당	당 1식	약 82㎡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향 일원	(관리자) 파평윤씨필선 공파문중회	'22.11.2.

민속문화유산(향토무형유산)

관리번호	명칭	지정대상	지정범위	소재지	보유자/ 보유단체	지정일
향토무형유산 제10호	한남리 본향당굿	-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마을회	'21.6.4

민속문화유산 가운데 기념물로 지정된 새미하로산당(동회천본향당)은 지정 당시, “전형적인 산신당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드물게 당굿이 전승되는 곳이며, 당굿을 할 때 산신놀이를 벌이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정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¹²⁾ 그러나 매인심방의 사망을 비롯한 전승공동체의 와해 등으로 인하여 약 7~8년부터 제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지극히 일부 신앙민들만 개인적으로 당을 찾아 비념을 올리는 방식으로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5] 새미하로산당 안내 팻말



[사진6] 새미하로산당 전경1



[사진7] 새미하로산당 전경2

월평동 다라콧당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의를 정기적으로 봉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 본향당에 화재가 발생하여 신목이 소실되는 사건 이후, 부녀회와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해 약 4~5년 전 비상사적인 당굿을 몇 차례 치른 것이 마지막 사례로 확인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제의 전승이 단절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다라콧당은 여전히 마을주민들에게 성소로 여겨지며, 마을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시에는 당일 아침 당을 찾아 신에게 고하는 소규모 고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월평동 출신의 심방이 해당 마을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앙심 역시 유지되고 있지만, 예산 부

12) 제주도고시제2005-19호, 제주도보 제979호 (2005.4.13.) 인용.

죽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제의 전승은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 전승을 지속하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정 유산이라 하더라도 신앙공동체의 의지와는 달리 제의 전승이 언제든지 단절·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강정본향당, 예레본향당의 제의 역시 앓은제(또는 비념)의 형태로 규모가 축소된 실정이다.



[사진8] 다라콧당 안내 팻말



[사진9] 다라콧당 전경1



[사진10] 다라콧당 전경2

이처럼 유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라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삶의 양상과 환경이 달라지면 전승 기반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지정 유산 제도가 마을제 전승과 관련된 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제도권의 보호 아래 일정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정 유산은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유·무형유산을 아울러 ‘지정 유산’이라는 지위가 곧 유산을 매개로 제의 전승을 보장하거나, 신앙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만능키와 같으리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유산을 자율적으로 유지하고 전승해 나가는 공동체의 내적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뒤따라야 한다. 특히

지정 유산으로서 부여되는 별도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 현실은 비지정 유산과 다를 바 없이 제의를 비롯한 신앙 기반이 와해되는 현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한편 마을제와 관련된 다수의 유·무형 유산 중 비지정 유산들이 오히려 견고한 전승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중 일부에서는 지정 유산 제도와 같은 행정의 개입을 번거로운 절차로 인식하거나, 곱끄러운 틀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난다. 지정 유산 가운데 전승 기반이 탄탄한 경우 역시 그러하다. 결국 마을제 전승과 관련하여 유산의 생명력을 떠받치는 것은 제도적 명분이나 틀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 ‘지켜내려는’ 하는 신앙공동체의 자생력과 그러한 의지라는 사실을 거듭 환기할 필요가 있다.¹³⁾

이런 측면에서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서귀본향당의 사례는 상당히 심각하다. 지정 당시 서귀본향당은 마을제 전승과 관련하여 학술적·역사적·민속문화적 가치가 상당한 유산이었지만, 현재는 신앙 기반뿐만 아니라 유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담지하는 신당의 외·내부 환경조차 완전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은 이 같은 위기가 자연스러운 신앙공동체 해체나 약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앙공동체의 전승 의지가 무력화될

-
- 13) 마을제 전승 관련 지정 유산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례는 성산읍 수산1리(수산본향당)이다. 기존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뒤, 수산본향당뿐만 아니라 동 신앙권의 진안할망당, 신술당에서도 제의를 연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면서 신술당 신앙의 재건·복원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신술당은 신당 소재지의 소유권 문제와 주변 공사로 인해 존립 여부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단골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의 비용을 확보하고자 수산1리 당맨심방, 단골관, 마을 총회를 비롯한 주민들과 행정 차원의 조력자 등이 합심하여 문화재 활용 사업에 지원한 것은 일종의 공여지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을제 전승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이현정, 「남쪽 끝에 남은 공동체의 기억과 이야기: 인문도시 서귀포의 동력, 무속과 이야기 전승의 자원화 현황과 과제」, 『인문학연구』 34,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34-35쪽. 이 사례는 유형 유산이라 하더라도 마을제 전승의 현재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마을제의 전승은 공동체가 처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주어진 제도적 여건을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준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이 거듭 작용하며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발단은 매인심방을 자처한 인물의 자의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신당 내부를 불교식 연등과 축원문, 불경 테이프 등으로 채워 사실상 ‘불당’으로 변모시켰고, 단골 이외의 외부 손님에게 점사를 보거나 개인적 살림살이를 당 내부에 반입하는 등 전통적인 제의·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신앙공동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동체 규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이었으며, 서귀 본향당은 유산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제의 전승 기반을 함께 상실하고 말았다.

박○옥 심방이 돌아가시고 조카인 박○석 씨가 당을 관리했다. 제일에 본향당에 가도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감수다.” 하고 입구에서 차려간 것을 놓고 제를 지내고 왔다. …(중략)… 현재 당국이 전승되지는 않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인곳으로 간단한 경을 낭송하고 몇몇 단골 주민들이 찾아와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¹⁴⁾



[사진11] 서귀본향당 내부 연등



[사진12] 신앙과 무관한 불경 모음집

14) 조정현·문봉순·김일영, 『2023 제주도 마을제의 전승현황과 특성: 서귀포시 동(洞) 지역 및 서부 지역 편』,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2023, 27쪽.



[사진13] 내부 불경 송출 흔적



[사진14] 축원초와 축원문



[사진15] 신앙 전통과 무관한 무신도 배설



[사진16] 신당을 차지한 개인 생활품

제일에 본향당을 찾은 신앙민들이 제대로 된 제의조차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잦았다는 증언은 유산의 본질적인 소유자이자 전승 주체인 신앙민들이 배제된 전대미문의 사례이다. 서귀본향당에서 제의가 전승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매인심방을 자처한 이가 집전에 필요한 기·예능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체 제의 대신 불교 신앙에 의지한 유사 행위가 제한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정 유산은 신앙공동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형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일부 단골들은 완전하게 전승 환경이 완전히 변질된 상황에서도 신당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한 전승 의지는 유산 보존의 어떤 원칙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와 노력도 지금처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관련 기

관이 신당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회수하고 일정 부분을 관리·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신앙민이 신당을 방문할 경우 관리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출입을 허가받는 방식의 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본래 자율적으로 작동해야 할 신앙 기반이 행정적 절차에 종속된 채,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서귀본향당은 전통적인 공동체 제의의 공간으로서 기능과 본질을 완전하게 상실한 채,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출입이 통제된 지정 유산’으로 남아버린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특히 유형문화유산은 보존·복원의 과정에서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변화만을 수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에도, 현재 유형유산으로서의 외형뿐만 아니라 신앙적 기능마저 무력화된 채 관리되는 실정이다.

비지정 유산의 경우, 지정 유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당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마을 각시당과 애월읍 수산리 본향당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남성마을 각시당은 제의 전승이 오래전에 단절되지만, 마을 이장을 비롯한 원로



[사진17] 각시당 전경1



[사진18] 각시당 신목

들이 신당을 마을의 중요 유산으로 인식하며 보존·관리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지속하여 온 사례이다. 실제로 각시당은 해당 신당은 학술적·민속학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제의 전승의 단절’을 이유로 번번이 지정 유산으로 등재되어 제도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신당 앞에 안내 푯말을 설치하려는 마을의 예산 요청마저 반복적으로 거절되는 상황이다.

남성마을 각시당의 사례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당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제도와 행정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더욱이 현행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는 일정한 조건 하에 제장(祭場)의 정비나 복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제의의 지속 여부나 복원 가능성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을제 전승과 관련된 유산 전반에 대한 공동체의 전승 의지와 노력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례나 지정 유산 제도 안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러한 의지와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남성마을 각시당은 지정 유산 유무에 따른 지원 방안과 제도의 절차적 한계 앞에서 외면되고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제도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실질적인 전승 의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애월읍 수산리는 본향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기반과 제의 전통이 오랜 시간 단절된 상태



[사진19] 수산리 본향당 전경1



[사진20] 수산리 본향당 전경2



[사진21] 수산리 본향당 후경

였다. 마을 내부에서는 신당이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협의를 거쳐 폐당을 결정하였고, 그 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앙·제의 전승을 비롯한 신당의 기능과 의미가 전승공동체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존재 자체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을의 결정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전문가 자문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 두 사례는 비지정 유산이 시대 변화와 공동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들이다.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유산의 흔적이나 기억을 남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기록이나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공동체에서는 해당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문을 구하거나, 변화의 의미를 성찰하고 기록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소멸이 아닌, 공동체가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자체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정 유산은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신앙의 주체인 공동체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비지정 유산이 그 한계 속에서도 전승공동체가 갈등이나 문제 양상의 해결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물론 폐당은 신앙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품은 장소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정이다. 그러나 전통의 전승은 존재의 지속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기록하고 해석하려는 노력 또한 그것을 잇는 또 다른 전승이다. 앞으로의 유산 정책은 단순히 ‘보존’에 머물지 않고, 유산의 변화 과정을 함께 바라보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행정·정책 지원 주체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세일 것이다.

오늘날 제주도 마을제 전승을 비롯한 관련 유산들은 ‘지정’과 ‘비지정’, ‘존속’과 ‘소멸’, 그리고 ‘전통’과 ‘현대’라는 이분법만으로는 전승의 실상이나 가치 등을 온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관련 유산을 변화하지 않는 원형처럼 바라보는 통념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유산은 정제된 형식이 아니라 ‘전형’으로서 공동체의 선택과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하여 온 총체이다. 인식의 지형이 바뀌는 지점에서야 비로소, 마을제 전승을 비롯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좌표 또한 새로운 공진(共振)의 토대 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 <부록: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신앙 전승현황표>, 『한국의 마을신앙: 제주특별자치도』, 2023.

박정석, 「네팔의 사회정치적 변혁과 동물 희생제의: 테라이 지역 가디마이(Gadhimai) 사원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74, 비교민속학회, 2021.

이현정, 「남쪽 끝에 남은 공동체의 기억과 이야기: 인문도시 서귀포의 동력, 무속과 이야기 전승의 자원화 현황과 과제」, 『인문학연구』 34,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조정현·문봉순·김일영, 『2023 제주도 마을제의 전승현황과 특성: 서귀포시 동(洞) 지역 및 서부 지역 편』,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2023, 27쪽.

고은경 기자, <흑돼지를 현장서 죽여 제물로... 동물학대 논란 제주 의례 ‘포제’ 바뀌나>,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0614300000738?did=NA>

동물자유연대(KAWA), <동물의 희생을 대가로 평안을 바라는 풍습은 그만 되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animalkawa/223768182959>

동물자유연대(KAWA), <마을 제사를 위한 ‘소 공개 도살’을 막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animalkawa/22334492346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고 시

제주도고시제2005-19호

제주도지정문화재지정(예능보유자인정)및보호구역변경등고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예고한 제주도의 신당, 해녀노래 예능보유자와 화북비석거리 소재지 변경과 북제주군 광령리 소재 지석묘 보호구역 지정 등을 동 조례 제19조,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주도 문화재 지정(예능보유자 인정), 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보호구역 등을 변경키로 하고 동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3일

제 주 도 지 사

1. 고 시 명 : 제주도 지정 문화재 지정(예능보유자 인정) 및 보호구역 변경 등 고시

2. 제주도 지정 문화재 지정(예능보유자 인정) 및 보호구역 변경 등

가) 제주도의 신당 지정

- 종 별 : 제주도 민속자료
- 지정번호 : 제9호
- 문화재 명칭 : 제주도 신당(濟州道 神堂)
- 소 재 지 : 도일원
- 지정수량 : 1곽
- 관리단체 : 시장, 군수

○ 지정세부 내역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량	보 호 범 위	소유자	관리단체 (관리자)
제9호 제주도 신당 (濟州道 神堂)	도 일원				
9-1호 송당본향당	북군 구좌읍 송당리 산 199-1	1락	외곽 10m	송당리새마을회	북제주군
9-2호 새미하로산당	제주시 회천동 1058	1락	545㎡	채수립 외	제주시
9-3호 와흘본향당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1274-1	1락	848㎡	와흘리새마을회	북제주군
9-4호 수산본향당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451	1락	268㎡	수산리새마을회	남제주군
9-5호 월평다라굿당	제주시 월평동 1137	1락	외곽 10m	강교훈 외	제주시

○ 지정사유

- 송당본향당 : 이 당은 제주 당문화의 뿌리이고, 제주 기층문화의 상징적인 신당으로 송당리마을제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는 등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새미하로산당 : 이 산당은 '새미하로산또'를 모시는 전형적인 산신당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드물게 당곳이 전승되는 곳이며, 당곳을 할 때 산신놀이를 벌이는 곳이다. 형태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신목형의 대표격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와흘본향당 : 이 당은 매년 1월 14일에 당곳을 크게 하며, 동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굿판에 참여한다. 수령이 많은 팽나무가 있는 신목형 신당의 대표격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수산본향당 : 이 당(울웨르루하로산당)은 본래는 초가집 형태의 당집이었다. 이 당에서 모시는 하로산신은 한라산계 당신 9형제 가운데 말이다. 본풀이에는 송당의 소천국이 이곳으로 옮겨와 좌정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한라산계 계보의 발원처라는 전승사적인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월평다라꿇당 : 이 당 안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커다란 팽나무가 있고, 왼쪽 담을 의지하여 나지막한 제단을 마련하였다. 규모는 작으나 신목형 신당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210호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등 3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사항을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 고 명 :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등 3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공고

2. 공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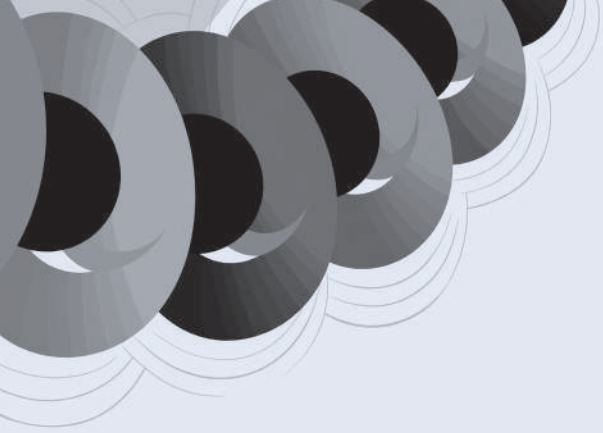
1)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 종 별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제22호
- 명 칭 :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 소재지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1-2번지 지선 공유수면
- 지정면적 : 164㎡
- 지정범위 : 799㎡(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164㎡+ 보호범위 635㎡)
- 유형/종목 : 유적건조물/종교신앙/민간신앙/마을신앙
- 시대/연대 : 미상
- 신 명 : 용왕(龍王), 선왕(船王)
- 구조/형식/형태 : 신석형(神石型), 신목형(神木型) 혼합형식
- 관 리 자 : 종달리 · 종달어촌계
- 지정사유

- 이 당은 제주도 해신당의 한 형태로 바닷가 쪽으로 뻗어나간 해안선의 끝자락에 입석형으로 솟아있는 자연석을 신체(神體)로 하고 있으며, 신체 틈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삼고 있는 당(堂)인 동시에 현재까지도 어부와 해녀들이 공동으로 용왕신(海田守護神)과 선왕신(船泊守護神)을 모시고, 무사안녕과 풍어 등을 기원하는 등 제주도 해양신앙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당으로 향토유산적 가치가 높다.
- 또한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면적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신당의 외형적인 면에서 제주돌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당의 위치 또한 어로와 관련된 복을 기원하는 성소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 더불어 당 주변에 우도, 토끼섬 등이 자리하여 빼어난 경관을 담아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타의 신당에 비해 해안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2) '오정빈묘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 종 별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제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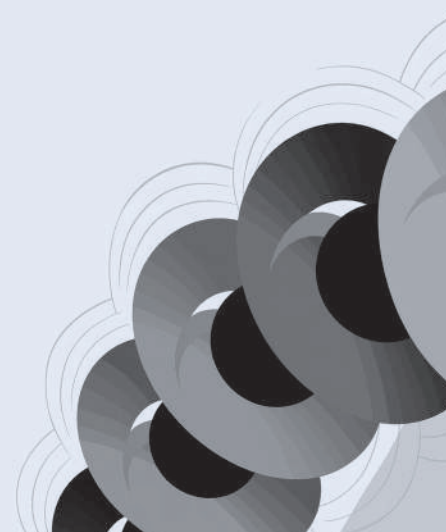


[발표2]

제주 마을제의 전승 주체와 지속가능한 제주형 자치문화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 마을제의 전승주체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자치문화

1. 머리말

제주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수호하고 주민을 지켜주는 신이 둘 이상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여성 사회에서 신앙하여 무속식으로 굿을 하는 본향당신(本鄕堂神)과 그 외 여러 기능신(機能神) 등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의 남성 사회에서 신앙하여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포신(酺神) 내지는 이사신(里社神)이다. 포신에 대한 제사를 ‘포제(酺祭)’라 하고, 본향당신과 기타 각 기능신에 대한 굿을 ‘당굿’이라 한다. 포제는 포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마을이 많아 그곳에서 지내고, 당굿은 각 마을의 본향당에서 굿을 한다. 포제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서는 해마다 ‘길할 방위’의 깨끗한 밭에 병풍을 치고 제상을 진설하여 마을제를 봉행한다.

남성 중심의 유교적 제의문화 형태를 ‘포제’ 또는 ‘이사제’ 등으로 일컫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실제로 모시는 신은 이사신, 토지신 등이어도 대개 ‘포제’로 일컫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봉행하는 남성 중심의 유교식 제의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로 ‘포제형 마을제’를¹⁾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 마을에서 사용하는 제의 명칭과 모셔지는 신은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도 마을마다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제의 명칭을 살펴보면, 포제, 정포제, 농포제(백중포제), 마을제, 별제, 별포제, 이사제, 토신제, 지신제, 포지제(포신과 토신을 함께 모심) 등으로 나타나며, 신명(神名)에서도 포신, 국신(局神), 이사신, 토지신, 지신, 동사신, 산신, 태세신, 별성, 서신, 사명대신, 운행지신 등 마을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포제형 마을제는 ‘새철드는날(입춘) 지나 첫정일(丁日) 혹은 해일(亥日)’로 제일이 정해져 있어 마을에 상이 나거나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한 날에 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육지부에서 정월 대보름에 마을공동체 제의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과도 견주어볼 수 있다. 포제의 장소는 전통적으로 인가와 거리를 두고 있는 포젯동산, 포제단 등에서 제의를 봉행해왔지만, 겨울철의 이동 간 안전 문제 등으로 마을회관이나 생활공간 인근에 제단을 마련하여 포제를 봉행하는 마을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대 탐라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인식되는 당굿과 달리, 포제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가²⁾ 없지만, 현용준 교수에 따르면, 본래 제주도의 마을공동체 신앙은 남녀가 함께 연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백성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면서 향교의 석전제(釋奠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포제가 형성되고, 그 결과 남성은 포제, 여성은 당굿이라는 형식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³⁾ 결국 남성의 포제와 여성의 당굿이 중층적으로 연행되는 제주도 마을공동체의 제의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신앙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으로 ‘전승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가운데, 마을제를 사례로 제

-
- 1) 마을마다 유교식 마을제에 대한 명칭이나 모시는 신이 다양함에도 대부분의 주민이나 행정당국에서도 포제로 일컫고 있으므로 ‘포제형 마을제’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조정현, 허남춘, 이현정,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 정책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2022, 15쪽 참조.
 - 2) 이대화에 따르면 최고 오래된 기록은 182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대화, 「제주도 포제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1쪽 참조.
 - 3)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368~370쪽 참조.

주도만의 독특한 마을공동체 자치문화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형 자치문화의 기반으로 마을제의 위상과 기능을 밝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제주 마을제의 전승주체와 특성

제주 마을제 현황에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크게 전승력을 강화하고 있는 포제형 마을제의 전통은 조선 후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의 포제와 관련한 기록으로 포신묘(醺神廟)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소림과원(小林果園) 안에 있었다. 산천단 안으로 옮겨 세웠는데, 지금은 없어졌다.”⁴⁾ 기록이 전한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포신묘(醺神廟)에 대해서 이원진의 『탐라지』 「제주」 사묘조(四廟條)에 “포신묘는 소림 과원 안에 있다(醺神廟 在小林果園中)”고 하였고, 조선 정조대에 발행된 『제주읍지』에는 “포신단은 산천단 아래에 있다(醺神段 在山川壇下)”고 하였으며, 19세기 중반에 나온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포신묘는 옛날 소림과원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한라산신묘 옆으로 옮겨 세웠다(醺神廟 舊在小林果園中 今移建于漢拏山神廟傍)”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포신묘는 사람과 사물에게 닥친 재해(災害)를 신에게 빌어 액을 막고 복을 빌던 제단으로, 오늘날의 포제단과 같음을 알 수 있다.⁵⁾

위 기록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제주의 포제가 제주목사를 중심으로 한 도 전체 차원의 국행제으로서 제향을 올렸던 포신묘의 전통이었다가,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 민간 마을 단위로 확장되어 전승되면서 토착화한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에 전승되고 있는 포제형 마을제는 이사제(里社祭)라고도 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거행하는 유교식의 독축고사형(讀祝告祀型) 제의이다. 본래 포제는 황충(蝗蟲, 메뚜기과에 속하는 해충)이 창궐할 때 지내던 제사였으며, 중앙에서 각 주현에 이르기까지 지내도록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되

4) 제주문화원, 『역주 증보탐라지』, 2005, 344쪽.

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이트-<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3009>(문무병, 「한라산신제」).

어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포제라는 이름이 대부분 사라졌음에도 제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포제는 그 내용 면에서 육지 대부분의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동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형식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군현 이상급 단위나 향교 등의 격에 이를 정도의 준비와 봉행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사제는 농경의례로서 명나라의 것을 가져와 조선시대 각 지방에 파급하려 장려했던 의례인데 『홍무예제』의 이사제 내용을 살펴보자.

무릇 각처 향촌의 인민은 리마다 1백 호 안에 단 1곳을 세우고 오토, 오곡의 신에게 제사지내 되 가물 때는 비를, 장마에는 갇 것을 기도한다. 그와 같이 되어 오곡이 풍등하면 해마다 한 사람씩 번갈아 회수(會首)를 맡아 항상 단장을 정결하게 하고, 춘추 두 사일(社日)을 당하면 기일보다 앞서 제장을 헤아려 공변(供辦)하였다가 날짜에 이르러 약속대로 모여서 제사지낸다. 그 제사에는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와 酒果 香燭 紙를 편의대로 사용한다. 제사가 끝나면 곧 회음을 행하는데, 회중에서 먼저 한 사람을 시켜 억강부약서(抑強扶弱誓)를 읽게 한다. 그 詞에 이르기를, ‘무릇 우리 동리의 사람은 각각 예법을 존중하고, 힘을 믿고 약한 자를 능욕하지 않으며, 위반하는 자는 먼저 함께 다스린 뒤에 관에 넘긴다. 혹은 가난하여 넉넉하지 못하면 그 집을 두루 도와주되, 3년에 자립하지 않으면 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혼인이나 상장에 궁핍함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서로 도운다. 만약 중의에 따르지 않거나 간음, 도둑질, 사기, 거짓 등 일체 비위하는 사람도 아울러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되, 誓詞를 읽기를 마치면 장유의 차례대로 자리에 나아가서 극진히 즐거워하다가 물러간다. 신명을 공경하고 향리를 화목하게 하는데 힘써 풍속을 순후케 한다.⁶⁾

결국 이사제란 그 명칭대로 마을의 사직(社稷)에 대한 제의라 할 수 있다. 토신과 곡신을 치제하는 농경의례인 것이다. 농경의례이자 상부상조와 마을자치를 강조하는 이사제가 제주 마을공동체의 성격과 부합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갖지 못했지

6) 『홍무예제』「제사에의」 리사조. 이대화, 앞의 논문, 22쪽 재인용.

만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 등 농경에 대한 동경이 강했던 제주의 상황과 맞아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충재로 인한 농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의로서 포제가 조선 후기 곳곳에서 봉행되었고 제주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국가적인 제의로서 포제를 마을공동체의 기존 본향당 곳이나 동제(이사제)에 덧씌워서 제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명분을 갖출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의 대표적인 사례 기사를 살펴보자.

호남(湖南)에 황충이 발생하여 포제(酬祭)를 설행하였다.⁷⁾

1781년 제주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에 황충이 발생하여 포제를 설행하였다는 기록이다. 메뚜기 떼 등이 창궐해서 이를 퇴치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라는 의미로 포제를 봉행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일정한 도의 위상을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전라도에 속해 있



도심 속 포제 연행 현장-도두1리 도두봉 포제단

7)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7월 27일 정묘 2번째 기사(1781년).



서귀포 보목마을 포제 흘기

으면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포제의 주체가 현으로까지 확대되고, 당시에든 상당한 독립적 자치체계를 갖추고 있던 제주의 여러 마을에서 점차 독자적인 포제형 마을제를 거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포제의 주체가 “국가 → 팔도 → 부목군현 → 마을”로 확산되면서 현재의 제주도 포제가 마을 단위에서 전승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포제(醕祭)는 마을공동체에서 거행하는 유교식의 독축고사형(讀祝告祀型) 제의이다. 본래 포제는 황충(蝗蟲, 메뚜기과에 속하는 해충)이 창궐할 때 지내던 제사였으며, 중앙에서 각 주현에 이르기까지 지내도록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포제라는 이름이 대부분 사라지고 실제적인 실행이 단절되었음에도 제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포제는 유교적 형식과 달리 그 내용 면에서 육지 대부분의 마을에서 지내오고 있는 동제와 비슷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 중심의 당굿에는 심방이라는 전문적 사제자가 결합하여 연행하는 반면, 남성 중심의 포제는 유교적 전통에 의거한 흘기(笏記)에 따라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당굿과 포제는 대체로 정월에 거행되는데, 동시에 또는 하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연행되면서 상반된 성격의 공동체 제의가 한 마을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당굿은 마을별로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신당에서 가무오신적인 형태로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연행되는 반면, 포제는 유교적 시공간으로 조성된 포제단에서 최소 여덟 명에서 최대 열여섯 명의 제관이 모

여 정숙한 분위기에서 연행된다.

제주도에서 봉행되는 남성 중심의 유교식 마을제로서 포제와 당굿(堂祭)이 남성 중심의 유교식 마을제와 무속식 굿으로서 뚜렷한 분리를 보이는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남성 우위의 유교적 봉건 질서가 확립되고 무속을 천시하여 굿을 제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을의 정치적 질서와 관련된 형식 의례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제는 마을의 남성들에 의해 관리된다. 제의를 준비 계획하고 집행하며 사후 결산하고 하는 조직이 '포제 상회[鄉會]'다. 연말이 되면 포제 준비를 위한 포제상회를 열어 제향비(祭享費) 마련 문제, 제청[제관들이 합숙 재계할 집]과 제의 준비, 제관 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포제가 끝나면 결산 총회를 한다. 포제를 관리하는 조직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체 조직으로 마을의 원로 지도자인 향장(鄉長), 존위(尊位), 동수(洞首) 등이 있고, 향장의 보좌역인 공원(公員), 서무역을 맡은 총무 등으로 구성되어 포제를 봉행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안덕면 덕수리 등이다. 덕수리에는 향장이 있어 이장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포제, 마을축제, 마을 내 갈등 해소, 문화유산 관련 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마을 행정조직으로서 이장-개발위원 등 마을임원-반장 등의 조직에서 마을 주민을 소집하여 포제상회(포제향회)를 열고 제의를 준비하고 봉행하는 방식이다.

포제형 마을제의 실행단계에 들어서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나는데, 별도의 포제봉행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하는 방식과 이장단을 중심으로 직접 집행하는 형태이다. 향회에서 선출되는 제관은 5~16명의 제관이다. 하제관의 수를 줄여서 5~6명의 제관으로 하는 마을도 있고, 도예차(都豫差)까지 넣어 13제관을 뽑는 곳도 있다. 제관은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



도두1동 포제청 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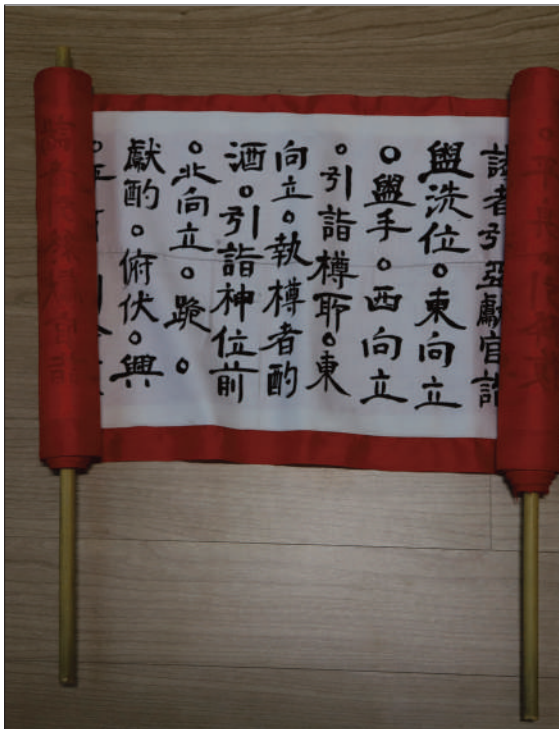


보목마을 정포제 예행연습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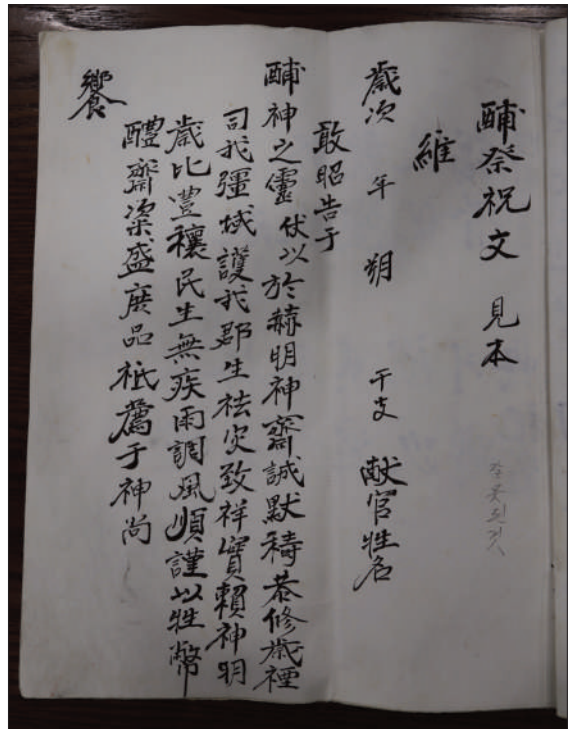
종헌관(終獻官)·집례(執禮)·대축(大祝)·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人)·봉로(奉爐)·봉향(奉香)·봉작(奉爵)·사준(司樽)·진작(奠爵)·전사관(典祀官)·도예차(都預差) 등이다.

포제의 제관은 연말이나 정초 마을회의(향회)에서 선정하는데, 마을 내 위상과 재력, 금기나 부정과 관련한 생기복덕(生氣福德), 마을 내 성씨 배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민들은 초헌관, 아헌관, 삼헌관 등 제관에 선정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초헌관에 선정되는 것은 가문의 자랑일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했다. 삼헌관과 대축 등의 상제관과 알자 등 하제관의 배분 또한 흥미로운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상제관은 마을의 원로나 기관장 등이 맡고 하제관은 후속세대로서 마을의 청년회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 포제의 제관 선정을 통해 마을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레 계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포제는 향교의 석전과 마찬가지로 입제(入祭)와 파제(罷祭)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 기간이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달했고 현재는 2박3일 또는 1박2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회에서 선정된 제관들은 입제하며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과 초헌관 집, 포제단 등에 금줄을 치고 합숙하며 재계(齋戒)에 들어간다. 이때 홀기와 축문도 작성하고 2-3회 예행



함덕1구 홀기



도두1동 포제 축문



보목마을 포제단에 진설된 제물



사계리 별포제 제수 진설(분육한 돼지고기를 세 신위에 올림)

연습도 하면서 포제를 거행할 만반의 준비를 한다.

포제는 마을 전통에 따라 전해온 흥기에 의거해 집례의 ‘창홀’에 따라 실행한다. 자정이 가까운 야심한 밤이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예행연습을 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흐트러짐 없이 제를 진행한다. 포제는 흥기에 따라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독축(讀祝)-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철변두(撤籩豆)-망료(望燎)” 순서로 제가 실행되고, 제관들의 음복으로 종료한다.

제주도 포제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통돼지를 온마리로 희생제물로 올린다는 사실이다. 마을의 전통이나 사정에 따라 통돼지를 분육해서 올리기도 하고 돼지머리만 올리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온마리의 돼지를 희생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마을에서는 제물로 올린 돼지 한 마리와 마을 주민이나 손님 접대를 위한 돼지 한 마리를 잡기도 한다. 척박한 제주의 토양에서 고기를 먹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산의 온평리 등 몇몇 마을에서는 돼지가 아닌 소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당곳의 전통이 강한 온평리에서 돼지를 금기하는 본향당 신앙과의 조화를 위해 포제 희생제물로 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온평리는 ‘포제곳’이라 해서 마을의 포제와 당곳이 거의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이다. 자시에 포제를 지내고 3-4시간 뒤에 본향당곳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포제를 지낸 제관들이 본향당곳에 갓을 쓰고 함께 참여하여 절을 올린다. 포제와 당곳, 유교식 제사와



보목마을 포제 초헌례의 헌작

-제복을 갖추지 못한 청년회원들이 담 밖에서 참사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무속식 굿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며 연행되어온 전통이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셈이다.

포제를 봉행하고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온 제관들은 포제에 사용된 제수를 활용하여 함께 음복을 나눈다. 본래는 포제 다음날 아침 마을주민들이 모두 회관에 와서 수고한 제관들에게 절을 올리며 제를 모시느라 고생했다며 치하하는 방식으로 음복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최근 행사가 간소화 되고 코로나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관 중심의 음복으로 축소된 것이다. 또한 제관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재계하는 동안에 마을 주민과 인근 기관이나 이웃들이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포제청을 방문하여 찬조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간다.

한편, 본향당을 중심으로 한 당굿은 해당 마을의 ‘당을 메고 있는’ 심방에 의해 연행된다. 대체로 당굿은 정월의 신과세제, 2월의 영등제, 7월의 마불림제, 10월의 시만국대제 등 4대 제일이 정해져 있는 곳이 있고, 마을 형편에 따라 신과세제와 마불림제만 올리는 등 다양하게 제일을 정하여 굿을 전승하고 있다. 본향당에는 성씨별로 상단골·중단골·하단골이 대부분 정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상단골을 중심으로 당의 관리 및 굿의 준비를 하는 것이 원칙으



온평리 포제가 끝난 후 본향당곳에 참석한 제관들

로 되어 있다. 한편 굿을 하는 심방은 ‘메인 심방’이라 해서 전속으로 굿을 담당하는 심방이 정해져 있다.

마을제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 포제와 당굿은 일면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보목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언이 전하고 있다.

“정포제 입제하는 게 큰굿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다!”

남성들로 구성된 보목마을 포제 제관의 이 말처럼, 정포제를 지내는 남성들은 여성 중심으로 진행되는 심방의 굿만큼이나 포제의 영험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백 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심방의 큰굿보다 정포제에 제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영험이 크다는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킴으로써 포제로 상징되는 남성 중심 유교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의 신앙형태가 남성 중심의 포제와 여성 중심의

곳으로 분리되어 전승되면서 경쟁적 중층적으로 마을제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여성 중심의 곳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가변성이 높은 반면, 남성 중심의 포제는 폐쇄적이고 고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승주체의 측면에서, 제주 마을제는 제의전통을 이어갈 후속세대 양성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향당 당굿이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등의 단골 체계를 통해 전승력을 강화하고 후속세대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보했다면, 포제나 리사제 등 유교식 마을제는 제관이나 보조자로 참여하는 청년회 등과 함께 하는 합숙 등을 통해 공동체제의 후속세대가 자연스레 제의의 전승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숙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에 대한 예행연습과 다양한 놀이판과 교유의 시공간은 청년세대와 격을 좁히고 마을의 진정한 성원으로 만드는 ‘사회화 교육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마을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본향당굿과 남성 중심의 포제형 마을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성산읍 신천리의 사례를 보면 마을제 이름은 포제이지만 실제로 모시는 신은 고춧당신과 용왕일 뿐만 아니라 제물에 있어서도 돼지가 아닌 장닭과 돌레떡을 올리고 제의 마지막에 여성 주민들도 참여하는 소지 올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굿형 마을제와 포제형 마을제의 결합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산읍 고성리와 난산리 등에서는 포제형 마을제를 ‘국제(局祭)’라고 하는데, 이는 성산읍 지역 고유의 역사적 흔적인 것으로 보인다. 옛 현청이 있던 지역이기에 일반 적인 마을의 제의가 아닌 보다 큰 단위의 제의로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국제 라는 용어를 쓴다는 추론과, 옛날에 어떤 지관이 마을의 지형을 보고는 마을제의 명칭을 포제보다는 국제라고 하는 것이 복이 더 많을 거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전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곳곳에서 ‘날과 국 섬김’ 제차나 여러 본풀이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인물명으로서 ‘국’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실제 당본풀이와 제의의 맥락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마을의 전통적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난산리에서는 마을내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월 마을 축제로 본향당 신앙,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

의 특산물이자 주요 생업이 꿀(벌잡)이라는 점에서 남원2리 포제에서 나타난 신품종 꿀을 제물로 올리기를 청하고 제관들이 승낙한 사례는 지역의 산업적 정체성이 공동체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사례로 주목되며, 삼달리의 ‘운행지신’ 역시 마소 목축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문화변동의 양상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마을과 지역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마을제의 전통은 이장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의 총회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열리며 이장을 선출한다. 따라서 초임 이장이 제일 처음 준비하는 공식적인 사업이 바로 마을제이기에 신임 이장은 마을과 지역의 정체성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을제에 정성을 쏟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장과 발맞추어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등도 성심을 다해 협력하여 마을제를 봉행하게 된다. 연말연시의 이장 선출이 마을제의 전승력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3. 마을제를 통해본 제주 마을공동체의 자치문화와 지속가능성

‘대동사회’를 꿈꾼 제주의 유교지향적 유림과 주민들은 마을을 기반으로 문치교화(文治敎化)의 세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로 부임했던 목사·관관·현감 등이나 유배를 왔던 선비뿐만 아니라 제주의 토양에서 배출된 선비들 모두에게 공히 수행되었다. 자신의 부임지나 유배지,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 유가의 이상사회로서 대동사회를 꿈꾸고 부단히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대도(大道)가 행해졌을 때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었고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게 하니 사람들은 그 부모만을 홀로 부모라 여기지 않았고, 그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는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게 했고, 젊은이는 다 할 일이 있었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었고, 과부, 홀아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 봉양했다. 남자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시집갈 자리가 있었으며, 재물을 땅에 버리는 것을 싫어했지만 반드시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는 않았다. 몸소 일하지 않는 것을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에 간사한 꾀가 막혀서 일어나지 못했고, 도둑이 훔치거나 도적들이

난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바깥 문을 여닫지 않았으니 이를 일러 대동(大同)이라고 한다.⁸⁾

제주도에서 대동사회에 대한 열망은 각 마을의 향약, 자치 규범, 자치 관행 등 다양한 자치 문화 속에서 확인된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마을공동체 자치를 실행해온 제주인들의 모습살이 전통이 대동사회의 이상과 잘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여러 곳, 예를 들어 덕수리나 금능리에 남아 있는 ‘향장’ 전통이나 제주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포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포제는 향교나 서원에서 거행하는 제례에 준해서 홀기에 따라 정통 유교식 제의로 이루어진다. 일개 마을 단위에서 정통 유교식 제례를 매년 마을공동체의 제의로 실행한다는 사실 자체로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대동사회의 실현 의지는 마을의 자치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꽃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육지부 경북 부인동 향약의 사례를 백불암 최홍원의 『역중일기』를 통해 살펴보자.

부인동(夫仁洞) 동약소(洞約所)에서 보낸 고목(告目)을 받아보았다. 기양(祈禳)⁹⁾을 행하라고 요청한 일이었다. 축문을 작성하여 보내고, 벼 3섬을 허락하였다. (1750년 1월 20일)

동네 어른과 젊은이들이 일제히 모였다. 강회가 끝나고 선공고(先公庫)의 곡물을 따로 떼놓고, 관원에게 요청하여 소 한 마리를 하루 잔치에 이바지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또 다소간의 술과 음식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리 먹으면서 환호를 하였으니, 이것이 동약(洞約)의 효과이다. (1755년 11월 9일)

8) 『禮記』, 禮運篇.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脩睦 故人 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用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廢 是謂大同”(중국철학연구회 편저, 『중국의 사회사상』, 형설출판사, 1993, 151~152쪽).

9) 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오라고 비는 일로, 정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볼 때 지신밟기 등이 결합된 동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양 제의를 하고자 할 때 최홍원이 직접 축문을 써주고 쌀까지 내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부인동 동약이 일찍부터 독립적인 마을공동체의 위상을 갖추어나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강회를 할 때 소를 잡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 하나의 유교공동체로서 동약의 성격을 드러내며 대동사회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홍원의 『역중일기』에는 대동의 기치 아래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며 마을사람 모두가 더불어 즐기는 장면이 제시된다. 대동사회의 실험지로서 부인동에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동약(洞約)을 시행하고 함께 꾸려가는 효과라고 만족해한다.¹⁰⁾ 또한 이영훈에 의하면, 경상도 예천군 맛질의 동회(洞會)는 상하(上下)가 함께 모여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요란스러운 축제였다.¹¹⁾

제주의 마을제 역시 마을회(동회)를 통해 향약(동규)에 기반한 자치문화를 유지해왔고, 이러한 자치문화의 상징적 집약체로서 마을제를 봉행하면서 신인동락하는 대동사회를 마을 내에서 실현해내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의 마을제는 마을공동체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는 마을의 향장과 존위, 노인회 등에서 주도해나가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민장이나 구장, 이장 등과 협의하여 초헌관 등 제관을 선정하고 마을제를 봉행해오다가, 행정체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마을회의 회장이기도 한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제를 봉행하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은 제1조에서 “중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라고 자치권에 대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

10) 조정현, 『『역중일기』를 통해본 조선후기의 향약과 마을공동체 운영』, 『영남학』 67, 2018, 254~255쪽 참조.

11) 이영훈,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271쪽.

하 '자치조례'라고 한다)의 개정을 통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0. 11.25. 자치조례에 주민총회 및 위임·위탁 사무 규정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 제도개선 방안(이하 '자치조례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마련했다.¹²⁾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각 읍면동 내 전통적 생활문화권을 단위로 하는 자치조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마을 단위 자치조직은 '마을회'를 따로 조직해서 자치위원회와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형 자치문화의 최소단위이자 핵심단위가 바로 동이나 리에 조직된 마을회인 셈이다. 특히 리 단위는 공식적인 행정단위로서 위상과 지원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이 마을회를 추가로 구성하여 행정체계에서 관리되기 어려운 마을공동체 관련 제의문화, 향약, 대대로 내려온 공유자산, 축제,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회를 주목하여 제주형 자치문화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제주에서 마을공동체의 특수한 현상은 이장 등의 행정라인 조직과 별개로 운용되고 있는 '마을회'라는 전통 조직의 전승양상이다. 제주의 자치전통으로 전승되어온 형태로 파악되는데,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을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당곳이나 포제와 같은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사업, 마을 공유자원의 관리 운영, 마을 축제 기획 운영 등 이어서 외지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토박이 제주인들의 중심조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각 지역 단위에서 부사나 목사, 현감 등의 파견 관리와 짝을 이루며 지역 정치를 영위해왔던 호장 또는 좌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조직의 이중적 구성과 닮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역할 면에서도 지역 기반 조직으로서 호장 계열이 공식적인 공무 계통은 아니지만 지방의 각종 제의와 축제 등을 담당했던 조선시대의 전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어 향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신용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국제법무』 13집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회, 2021, 131~132쪽 참조.

마을제의 실제적인 자치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는 데 흥미로운 사례로, 영락리의 마을제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마을회의 전통이 최근까지도 역동적인 형태로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경 포제 동산이 일본군 진지로 구축되면서 일제의 강압에 의해 포제가 단절되었다가 2016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금 복원하게 되었고, 그 형식도 자정에 지내는 것이 아닌 아침 10시에 포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변모된 형태로 포제를 지내게 되면서 달라진 점은 마을주민들의 참석율이 높아졌다고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로서 마을잔치와 같은 위상을 되찾았다는 점이다. 본래 마을제의 모습은 엄숙주의에 경도된 독축고사형이 아닌 가무오신형이었음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영락리 포제는 형식은 달라졌지만 본래의 목적과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 마을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을회의 자치전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을회는 의무가입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의사와 회비납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토박이들이 참여하고 외지인들은 소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



대정읍 영락리 포제(포제 복원 및 오전 10시 봉행)



포제 참여 주민들의 소지 올리기(성산읍 신천리)

인다. 이는 각 마을문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동계, 동접례 등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식적인 행정체계에서 풀어낼 수 없는 제주 전통의 고유문화에 대한 전승자로 마을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산읍 신천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본향당굿과 남성 중심의 포제형 마을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이루어내고 있어 주목된다.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참여가 금지된 포제에 마을 여성들이 참여하고 소지를 올리고 있다. 비록 마을제 명칭은 포제이지만 실제로 모시는 신은 ‘고춧당신’과 ‘용왕’이다. 또한 제물에 있어서도 당신이기도 하기에 돼지고기 금기를 지켜 통돼지가 아닌 장닭을 제물로 올린다. 본향당굿에서 제물로 올리는 돌레떡도 진설하고 포제의 마지막에는 여성 주민들도 소지 올리기에 참여함으로써 당굿형 마을제와 포제형 마을제의 상생적 융합 양상이 잘 드러난다.

표선면 가시리와 남원읍 한남리 등에서는 본향당굿을 준비하고 연행하는 단골집단이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이들은 오래된 전통에 따라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등으로 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래 종부는 내로라하는 종갓집의 안주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만큼 한 마을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안주인으로서 위상과 가치를 본향당의 상단골에게 부여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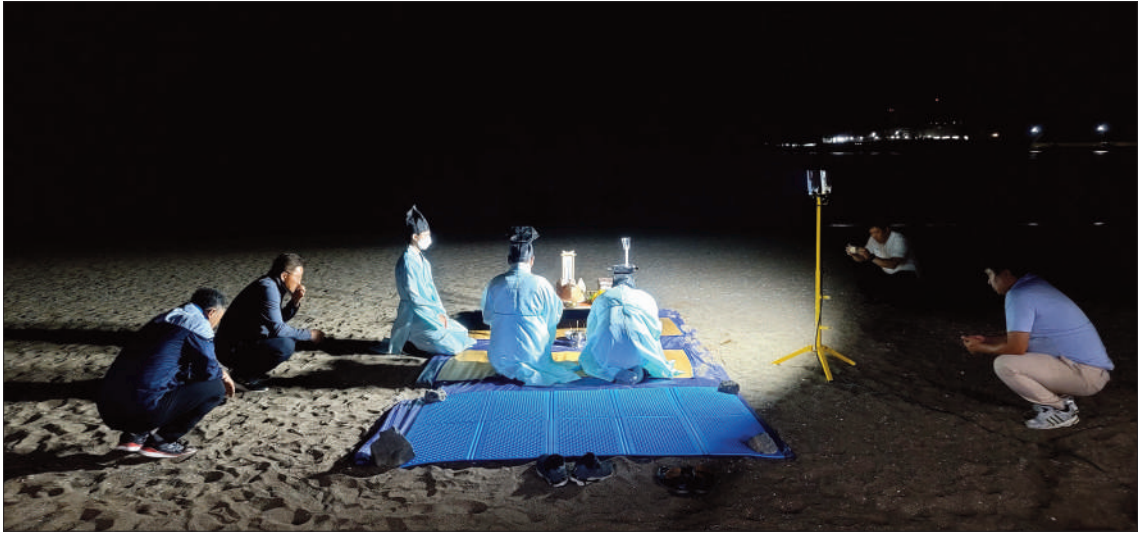
1909년 고문서에서 만난 제주여성. “元召史 改夫贖五錢”. 원소사[조이]가 남편을 바꾼(改夫) 일로 벌금 5전을 마을에 냈다. 조선시대 여성의 호칭은 신분에 따라 달라 양반여성은 ‘~氏’, 중인여성은 ‘~姓’, 평민은 ‘~召史’라고 했다. 李氏, 李姓, 李召史가 그 실례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 등장한 元召史는 평민여성이었고, 비록 혼인은 했으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과감히 남편을 내쫓았고(바꾸다!!!), 그러자 이 소문을 확인한 마을에서는 이런 행위가 풍속을 저해했다며 벌금 5전을 부과했고 이 돈을 포제 때 희생(犧牲) 값으로 썼다. “改夫”!!!(무능력한 남편을 바꾸기)는 한반도 양반사회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가능했다. 제주도는 요즘도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높다.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개부”의 사례는 제주여성사, 가족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³⁾

위 자료에서는 벌금을 내게 한 주체가 마을로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향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자치조직의 권위에 의해 내려진 판결로 보이고, 이 벌금을 포제의 희생준비금으로 썼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향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자치조직에서 도덕적 문제에 대한 판결과 집행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주요 활동으로서 마을제에 벌금을 사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마을의 변화를 반영하는 마을제의 전통 변개와 신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안덕면 화순리나 제주시 이호동의 경우, 생업의 공간이던 모래사장과 연근해가 해수욕장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해수욕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마을제를 봉행하고 있다. 이 ‘안전기원제’는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서 수행한다.

제주 마을제에서는 마을회 기반의 독립적 의례 봉행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며 토박이 중심의 주재집단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행정체제와 구

13) 강만익, 페이스북 글, 2024. 10. 16. <도순리 호적중초> 자료.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안전 기원제 봉행

분되는 마을회 조직을 통해 제의의 자치적 성격을 천명하고 독립적인 자치문화를 마을제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마을회가 제의의 전승주체로 나서는 제주의 마을공동체 실상은 제주의 신앙문화가 외부로 인식되는 행정체계의 꺾박을 받아온 이전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시대 관의 개입이나 근현대 시기 새마을운동 등 미신타파 담론에 맞설 수 있는 조직이자 이념적 대응으로서 마을회의 문화전통이 마을제의 전승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4. 제주 마을제의 지속가능한 전승 방안

제주 마을에서는 금기의 방식이 혼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본향당 곳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반면, 포제에서는 돼지 온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으며, 몇몇 마을에서는 포제 제관들에 한해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라고 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포제청이나 포제단에 여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당곳에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적극 환영받고 있다. 포제에 여성이 참여하는 신천리의 사례나 본래 남성들의 제의였던 수산 본향당곳 등의 사례 등을 볼 때 제주 마을제의 전통은 끊임없이 진화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제주도 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으로서 당굿과 포제는 통합과 분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공동체의 신앙체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신앙체계가 마을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차이를 보이는데, 포제가 마을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포괄적으로 기원하는 반면, 당굿은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 내 가가호호의 화복을 비는 측면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향교의 정통 제례 형식이 마을공동체 신앙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포제를 비롯한 제주의 유교문화는 마을 내 자치를 강화하고 기존의 향토신앙과 상생하며 생활문화로서 유교를 내면화하는 문화 기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토착화된 유교문화로서 포제는 유가의 대동사회의 이상을 마을공동체 내에서 실현한 사례로 주목된다. 포제가 거행될 때에는 마을 내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마을 내 선비와 유지들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회는 전통문화로서 포제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며, 부인회는 제물 마련과 손님 접대를 위해 나서고, 청년회는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향후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성장해나가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이때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하지 않고 본향당과 포제청에 나와서 전 주민이 함께 공식(共食)하는 마을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밥을 함께 먹는 한 식구’로서 마을과 유교공동체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유교사상의 정수가 담겨 행동으로 실행되는 유교식 제의로서 포제를 통해 유가의 사상과 덕목을 학습하고 실천해나감으로써 마을 생활 속에 내면화하면서 효율적인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다. 대동사회의 실현으로서 포제가 제주도에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주 마을제는 마을공동체의 자치문화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문화기제로 전승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의 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결속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부녀와 청년 세대로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였던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자치문화의 양상은 행정 계통과 구분된 제주의 자치 전통에 의거해서 마을제가 전승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향장, 존위, 노인회 등에서 전통적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마을공유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반, 그리고 여러 파생 모임들의 참여를 통한 조직적 기반 조성 등이 바탕이 되어 마을제를 봉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강정식, 「마을회의록을 통해 본 마을제의 변화-안덕면 사계리의 경우-」, 『탐라문화』 2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김태영, 「조선초기(朝鮮初期) 사전(祀典)의 성립에 대하여」, 『역사학보(歷史學報)』 58, 1973.

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1996.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남제주군 문화유적(유·무형) 실태조사 보고서』, 2005.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남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 2003.

문무병,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성산읍 온평리의 경우」, 『백록어문』 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0, 7-35쪽.

박경하, 「朝鮮後期 儒敎祭儀와 土着信仰祭儀와의 關係: 濟州島 醮祭壇(理社壇)과 本郷堂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7, 한국역사민속학회, 1998.

신용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국제법무』 13집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회, 2021.

이대화, 「제주도 포제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두현 외, 『부락제당』, 문화재관리국, 1969.

이영훈,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조정현, 「『역중일기』를 통해본 조선후기의 향약과 마을공동체 운영」, 『영남학』 67, 2018.

조정현, 허남춘, 이현정,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 정책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2022.

중국철학연구회 편저, 『중국의 사회사상』, 형설출판사, 1993.

제주도, 『제주의 민속』, 1993.

제주문화원, 『역주 증보탐라지』, 2005.

제주특별자치도·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2009.

제주특별자치도·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2009.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한우근, 「조선왕조초기(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유교이념(儒敎理念)의 실천(實踐)과 신앙종교(信仰宗教)」, 『한국사론(韓國史論)』 3, 1976.

한형주 외,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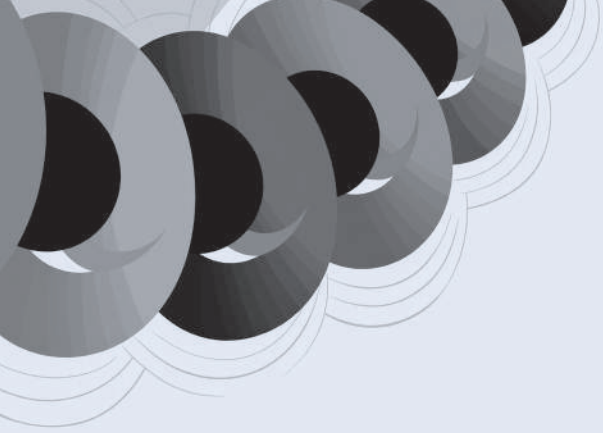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3009>(문무병, 「한라산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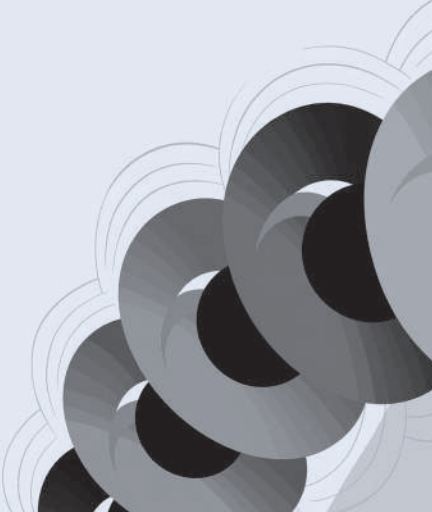


[발표3]

마을제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과 축제로의 전환 가능성

허남춘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제주 마을제의 정책 효율화 방안과 축제로의 전환 가능성 모색

허 남 춘

(제주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1. 서

▶ 마을제 - 마을공동체 + 기원의례

- 1) 공동체가 살아 있다.
- 2) 공동의 염원이 남아 있다.

- 어떤 공동체인가?
- 무엇을 기원하는가? 어떤 형식인가?
- 마을공동체의 중요와 무사안녕을 기원

▶ 지속가능한가?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있는가?

지속가능한 방식 찾기 = 축제화

지원 방식 찾기 = 정책 과제



2. 본향당

- 본향당 신앙과 당굿 – 일정 정도 유지
- 유무형 문화재 지정된 마을 – 자생기반과 더불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
- 심방, 마을회, 단골판의 결속력도 강함.
- 그러나 신앙민이 줄어들고 노령화하고 있어 위기가 닥치고 있음. 일렛당, 여드렛당 위축.
- 비지정 본향당 = 급격히 쇠락하고 폐당의 위기에 몰림.

본향당의 몇 가지 사례

- 다라곶당(민속자료 9-5)
- 화재 경험, 마을사람들의 각성, 심방(신순덕)도 있고, 주민의 신앙심도 굳건하고, 자생력을 갖춘 당이나, 지원이 필요
- 한남리 본향당(향토유산 10호)
- 마을협의회 전승의지 확고, 단골판이 축소되어 비용 총당의 어려움으로 굿이 축소.(선굿→얕은굿)
-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각시당(삼도동)
- 도심 속 본향당 부활의 필요성, 재정 지원 신청
- 송당본향당
- 행정기관이 개입, '단골판-마을회-심방' 간의 관계와 전승기반이 저해당함. 예산과 결산의 문제로 마을과 행정기관의 마찰, 인건비 지급에 심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본향당의 문제

- 서귀본향당
 - 천지개벽과 사냥의 신 신화가 두드러짐
 - 지금은 복원에 실패
 - 박생옥 조카 박정석 씨의 부당한 점거
 - 불교식 연등과 영가, 불경 등이 채워짐
 - 비정상적인 본향당 관리과 잡음 후에 외주업체가 관리
 - 관에서 나서서 당을 개축하고 정상화 필요
- 수산당 지원 사례 (오용부 심방)
 - 수산본향당과 진안할망당 의례가 살아나고, 신술당까지 당굿이 재개됨.







포제

- 자치행정과에서 포제를 지원
- 마을 당굿은 소외됨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당굿은 어디에서도 지원이 없음
- 도시 속 마을제가 지속되어 공동체성 훈련의 장이 됨,
- 그러나 70-80대 주관, 청년과 어린이 등 후속세대 전승 교육이 절실
-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도시 마을축제로 활성화할 필요.
- 마을제 --> 고을제로, 목관아에서 축제



해녀굿

- 해녀과에서 지원
- 심방굿이 300에서 500만원으로 부담 가중
- 늙은 해녀 다수여서 회비도 여의치 않음
- 젊은 해녀들이 신규 해녀를 키우고 적절하게 굿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
- (조천 해녀회장 면담, 2022.12.11)
- 조천읍 신흥리 해녀 수 감소와 노령화
- 비용 마련이 어려워 작은 규모의 굿으로 바꿈
- 기타 해녀굿도 향토유산으로 지정해 보존 필요.

지원정책의 문제

- 100% 자기분담금의 문제
- 정산 문제(제단을 직접 개보수하거나,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것으로 제물을 마련하는 경우)
- 지원이 나뉘어 있어 소외되는 경우 많음
-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합체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

지원정책의 개선

- 자부담 철회
- 정산방식 전환
- 마을제의 전체를 통괄할 <진흥위원회> 필요.
- 세계유산본부에서 문화유산 관련 부서를 본청으로 옮기고, <문화재과> 신설하여, 각 시청 산하 문화재과가 적극적으로 마을제를 관리할 필요
- 무형유산 담당 등 인력 보강, 부서 보강 필요
- 해녀과에서는 <해녀연구소>를 설치하여 해녀 연구 필요
- 해녀 수, 굿 참여 심방 수에 따른 융통성 있는 지원정책, 진흥의 관점에서 지원정책으로 바뀌어야 함
- 자치행정과의 마을제 지원 포제에서 마을굿으로 확대
- 단골이 사라지고 폐당하는 경우-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

정책제안

- <단기>
- 전국에서 제주만 남은 마을제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 국가 문화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 <중기>
-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인과 교육 강화
- 마을 공동재산(공동목장, 공동어장)을 토대로 한 마을 자치회의 지원(와흘본향당 마을회 운영)
- <장기>
- 주민 자체 마을굿 실행위원회 구성
- 차세대 중심 마을굿, 고을굿 축제화 -민족과 인류의 평화 기원

구체적 지원 대안

- 1)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2) 10년간 지원을 하고, 전승의욕과 성과가 있는 곳을 집중 지원한다.
- 3) 전승이 어려운 곳은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자체가 보존한다.
- 4) 10년 동안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정산은 하지 않는다. 10년 뒤에는 서서히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키우게 보조한다.
- 5) 포제 의례는 진지하지만 지루하기 때문에 현대에 맞게 오락성을 강화해 나간다.(제의성+놀이성)
- 6) 도시 포제는 주변 학교와 결합하여 의례를 행하되, 기원성을 강화하고 평화와 공존의식을 고취시킨다.
- 7) 해녀의 숫자 급감을 감안하여 해녀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바다 공동목장의 존재를 중시해야 해녀곳과 갯당이 지속될 수 있다.
- 8) 마을곳과 포제는 마을 안에 자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립하게 만들고, 둘이 함께 있는 경우 통합을 시도한다.
- 9) 해녀곳은 지속적으로 해녀과에서 지원을 하되, <문화재과>와 협업하여 제주도 문화재를 주민 축제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곳의 축제화 - 곳의 현실

<칠머리당영등굿의 예>

▶ 해방 후 무형문화유산 지정

미군정의 강항 영향력, 제국의 문화적 주도권, 일제의 태도와 다르지 않음
폐습으로 처분

미국을 모델, 서구 문화 수입에 급급, 상징적인 것 남기고 대부분 살처분
민속화자들이 가담해 민족문화를 말살, 운동장 경연대회

▶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나름의 의미질적

그러나 대부분 가쁜 숨을 쉬며 죽어감

문화재정은 분열만 조장, 방관자 역할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후 인식 제고, 그러나 본질적 지원책은 무.
도민들의 무관심, 자연유산>해녀>생물권보존>세계지질공원>칠머리당
해녀 3,000명 조합원의 표 = 폭발적인 지원, 상대적으로 칠머리당의 천대



문제해결 1 – 무형문화재 정책

- 일정한 잣대 평가, 표준화 지양
- 예산을 주고 참견하는 버릇 개선
- 체계적인 관리, 문화재청의 갑질 청산(성읍의 경우, 15평 이내 증개축 허용/ 무너진 집도 방치, 순번으로 수리/공무원의 무리한 주장과 갈등 심화: 2025년 6월. 성읍1리 고윤식 이장 인터뷰)
- 각각의 예술성, 경제성, 흥행성 고려
- 연명치료 거부

문제해결 2 - 축제화

▶ 건입동이라는 장소성

건입동 포구 – 건너편 언덕 – 사라봉 이전

탐동 매립지 곁에 40만평 항만공사(2025년 6월 24일 주민설명회에서 해녀 고복심의 말: 건입동은 항구가 아니고 돼지우리 같이 다 썩게 만들어서..., 강도순의 말: 마라도 4배 넓이를 메우면 작업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부의 말: 고깃배에 대한 배려 없는 토건세력의 이익 추구)

단골이 '0' 인 시대 도래

반 개발, 친 환경 사고 필요

▶ 전수회원, 일반회원, 대중 교육

전시, 홍보, 출판 – 대중적 공유 확대

▶ 대중적 친근성의 근원, 축제의 핵심 = 오신(娛神)

군웅놀이로 춤추고 노는 곳, 요란한 장단에 광적인 춤

영신 – 오신 – 송신 ▶ 자연의 질서

바람과 동행, 자연과 인간의 교감, 인간과 인간의 교감

영등굿

영등배는 수원리 어부들이 만들어왔다. 짚으로 만든 배가 아니고 나무로 짜서 1미터도 넘어 한발 정도 되었다. 돛대도 세운다. 영등배는 하나를 만든다. 영등굿은 한마디로 군웅놀이로 춤추고 노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아왔다. 당에서 초하루에 영등한영제를 시작해서 굿을 하고, 영등배는 그달에 첫 축일날 바다에 띄워 보낸다. 첫 축일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굿의 기간이 5일도 갈 수 있고 7일도 갈 수 있다. 영등배 놓을 때까지 굿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군웅놀이도 푸다시도 하고 서우제소리 부르면서 놀고 요왕맞이도 하고 시간을 보낸다.

‘요란한 장단에 광적인 춤’을 추며 오신(娛神)

<영신-오신-송신> - 중심은 신인동락(神人同樂)

. 보름 굿(초하루-보름) 부활

23







칠머리당 영등굿 전망

- ▶사라봉 문화거리 조성 -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축제, 거리제 위주.
영감놀이 대신 일주일 전후의 오신(娛神) 축제
바람의 축제, 해양문화 축제

신화 굿 축제

- ▶스토리텔링 축제, 세계신화 경연대회
신화를 변용한 문화예술의 경연장
굿 페스티벌 - 한국, 동아시아, 세계 섬문화 샤머니즘 축제
- ▶ 1차적 원형 보존 + 2차적 놀이성 확대 + 3차적 세계적인 신화 경연장

영등굿 활성화 방안

- ✓ 첫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 둘째, 음악, 춤, 노래, 이야기의 총체적 종합예술인 굿을 장르 예술로 세분해 교육하고, 젊은이들이 자주 무대에 서야 한다.
- ✓ 셋째, 공연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 -제주적 복합공연물
- ✓ 넷째, 놀이성, 오락성을 되찾아 신명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 제주굿 페스티벌

- ✓ 기반= '학술굿+놀이굿+기원굿'



송당본향당 전망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굿

- 1학년: 설문대할망 이야기
- 2학년: 영동할망 이야기
- 3학년: 삼송할망 이야기
- 4학년: 이공본풀이
- 5학년: 문전본풀이
- 6학년: 송당본향당 본풀이

▶ 전통 이야기 + 노래 + 춤 + 조형예술 =굿에 담긴 문화 예술 요소 =전통문화로 존중

▶ 마을이 교육의 일부를 감당, 학교가 마을로 걸어 들어가 지식과 삶을 일원화

▶ 본향당굿에 송당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하여 의례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마을의 안녕과 평화 기원



요즘 축제

- ✓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축제는 944건
- ✓ 문화예술과 전통역사 관련 축제는 409건이어서 거의 절반 가량이 다.(284건+ 125건)
- ✓ 제주 축제는 41건, 문화예술(14건)과 전통역사(8건)=22건
- ✓ 대부분 통속적이고 차별성이 없다.
- ✓ 노래자랑, 패션쇼, 보물찾기, 난타 경연대회
- ✓ 전국 어디에서건 유명 가수를 불러 늘기에 예산 반 이상 낭비.
- ✓ 축제의 본질이 망각된 탓이다.
- ✓ 경제적 득실만이 판을 친다.
- ✓ 이제 다시 축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35

축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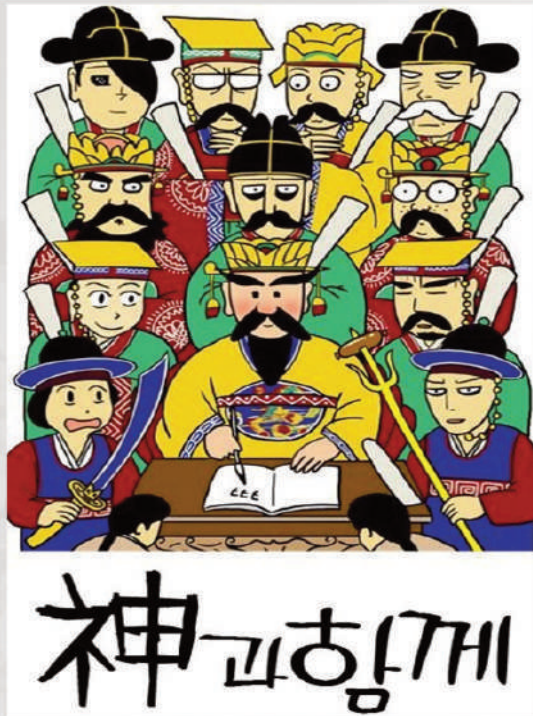
- ✓ 지역성과 역사성
- ✓ 지역의 삶과 생활환경,
- ✓ 전통문화축제 - 토속적 음식과 공연과 관습과 춤
- ✓ 축제는 국가와 지역과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
- ✓ 한 지역이나 집단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본질적 특성 즉 정체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 ✓ 정체성은 역사성을 전제로 한다.
- ✓ 축제는 언제 어떻게 지역과 집단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어떤 경과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가 하는 역사를 축으로 삼고 그 근원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시연으로 보여준다.
- ✓ 그 역사는 대부분 기록되지 않은 구술의 역사다.

36

구술의 신화와 곳

- ✓ 신화가 공적인 역사보다 더 진실한 역사여서가 아니라, 백성의 신앙, 기억, 그리고 사회정치적 미망 등을 보다 충실히 기록하기 때문.
- ✓ 신화는 세계, 인류, 삶 등에 대한 초자연적인 기원과 역사.
- ✓ 신화는 조상이나 지역, 영토에 대한 정보
- ✓ 신화는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
- ✓ 한 지역과 나라의 역사는 그 과거의 신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 ✓ 민중의 진실한 기억이 곳에 담겨 있다.

37



4. 정체성 탐색과 지속가능한 모색

- ✓ 정체성은 변함없는 본질적 특성의 의미
- ✓ 최근에는 만들어지는 것, 향상되어 가는 과정의 것, 완성되지 않는 것
- ✓ 전통의 핵심 + 당대적 삶과 사유
- ✓ 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고대적 요소가 중세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근대 이행기에는 중세적 요소를 감량하면서 근대적 세계관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었듯이, 시대적·계층적 적층성을 인정하고 현대의 축제도 선변(善變)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근대성+탈근대성)

39

제주의 정체성

- ✓ 근대사 80여 년 동안 국가 획일주의의 횡포 극복
- ✓ 서구적 근대성 극복
- ✓ 자본-테크놀로지, 기술의 진보에서 정신의 진보로
- ✓ 인간적 공동체성
- ✓ 생명 존중의 사유 회복
- ✓ 인간과 자연의 공존 - 현대문명을 치유

40



제주도 입춘굿놀이

- ✓ 봄 발갈이(춘경)는 상고 탐라국 시절부터 왕이 친히 발갈이하던 풍속인데, 예전부터 이를 제주목 관아에서 주관하여 매년 입춘 전날 제주도 전역의 무당을 관아에 모이게 하여, 나무 소를 만들어 제사하며.....호장이 쟁기와 따비를 잡고 와서 밭을 갈면 한 사람은 붉은 가면에 긴 수염을 달아 농부로 꾸미고, 오곡종자를 뿌리며.....또 두 사람은 가면을 써서 여자로 꾸민 후 처첩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연출하면, 또 한 사람은 가면을 써서 남자로 꾸미고 처첩이 투기하는 것을 조정하는 모양을 하면.....

43

제주도 입춘굿놀이 복원 의미

계절제익의 전통, 계절의 순환 시간의 흐름 깨우치기

갈등을 화합으로, 분열을 화해로 바꾸는 놀이이며 대동단결하는 축제 - 연합마을굿(고을굿)

“위로 하느님을 위하고 아래로 지부왕을 위하고, 물을 위하고 사직을 위하고, 천지개벽 후에 낸 규칙을 위합니다. 금년은 오곡이 풍성하여 이 창고에 넘치도록 하여 주십시오.”(<제주도실기>) = 우리의 책무 +기원

→ 우리도 하늘과 땅을 위하고 자연과 조상을 위하고, 국가가 낸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한 해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해야 한다.

44

곳과 신화의 복원

- ✓ 제주는 이야기가 풍부한 땅으로 '신화의 섬'이라 일컬을 수 있다. 그런데 신화를 살려내자는 구호만 있고 구체적 방안은 없다. 지금도 심방들에 의해 불리는 살아 있는 신화가 이처럼 풍부한 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는 책 속에만 있다. 그러나 제주 신화는 현장에 살아 있다. 그 신화를 믿고 현실 속에서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는 제주도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신성하다. 제주는 세계 신화의 수도이다.
- ✓ 이제 우리는 축제를 통해 제주 신화를 세계(인간과 자연의 공존, 인간과 인간의 평화 추구)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한다.
- ✓ 학교에서 지역 정체성을 가르쳐야 한다.(교육청이 바뀌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제주 신화와 신화를 담고 있는그릇-마을곳의 전승 주체가 되게 하여야 한다.

45



Jejuphoto.co.kr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네트워크 포럼

제주 마을제의 특성과 제주형 자치문화의 지속가능성

발행인 김완병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발행일 2025년 7월 4일

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